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32호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알선업체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회 위반 : 업무정지(2개월)/3회 위반 : 등록취소

2. 공고기간: 2024. 7. 18.(월) ~ 2024. 7. 25.(월)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이력
1	(주)유학케이이주공사	김우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5, 8층 (역삼동, 스타팅빌딩)	경고(2022.8.16.)
2	(주)주안이주공사	안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선릉로 638, 3층 (삼성동, 예림빌딩)	경고(2020.10.7.) 업무정지(2021.1.8.)
3	칭기스칸 세계이민경영컨설팅	김문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위워크 강남스테이션, 11-110, (서초동, 흥우빌딩)	경고(2020.10.7.) 업무정지(2021.1.8.)
4	(주)위드어스코리아	이호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주택건설회관 6층	경고(2015.3.2.) 업무정지(2015.10.15)
5	(주)리암어드바이저스	유상균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0층 알브이4 (삼성동, 아셈타워)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6	(주)탑코리아리도피앤씨	이윤영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 (황화빌딩)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7	와이앤케이이민컨설팅 주식회사	김호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대우도씨에빛 705호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8	(주)남앤파트너스	남준규 신상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16, 12층 (역삼동, 신웅타워)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9	주식회사 굿피플이주공사	박석현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0, 1804호 (서초동, 어반플레이스강남)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0	주식회사 뉴호라이즌컨설팅	김정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 312호(역삼동)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11	주식회사 예안	서영실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로 74, 608호(중산동, 힐즈스퀘어1)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2	주식회사 캐나다이민지원센터	김완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5층 (서교빌딩)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3	주식회사 테라인코리아	강기봉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2층 (신사동, 성도빌딩)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14	주식회사 투게다이민취업컨설팅	홍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서초동, 강남빌딩)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5	(주)와이즈연구소	이선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175, 2층 (창동, 줌스빌딩)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16	(주)케이알월드	박재환	서울 용산구 원효로 208, 102-203(용산센트럴포레)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7	(주)캐너스인터내셔널	강윤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515호)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회 위반 : 업무정지(2개월)/3회 위반 : 등록취소

6.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4. 7. 25(목) 15:00~17:00

- 청문장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회의실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사)해외이주협회 회장 박필서

-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2-6399-7134, 팩스 02-6399-7129, 메일 dongpo@korea.kr)

8.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청문회 진출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안수민 주무관, ☎ 02-6399-713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